

## 2024년 제3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과 임상심사위원 채용공고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'임상심사위원'을  
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4년 6월 20일  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

### 1.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

- 채용인원: 총 1명 (대체근로자 전형 1명)  
- 대체근로자 전형 (1명) (기존 근무자 휴직기간동안 휴직자의 업무수행)

지원 코드	직종	최대 계약기간	구분	부서	인원(명)
A19	임상심사위원(심사원 가급 I,II)	2025.09.12.	의약품	임상심사과	1
합계					1

- 담당업무  
- 임상시험계획서 심사,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검토 및 임상결과보고서  
자문 검토 등

### ○ 자격요건

등급	근무지역	자격요건
임상 심사 위원 (심사원 가급)	충북 오송 (평가원) 또는	◦ 가급I : 전문의 자격증 소지한 자 (임상시험 관련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우대)
	경기도 과천 (정부과천청사)	◦ 가급II :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 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

○ 구분별 채용예정분야

구분	채용예정분야
의약품	◦ 의학

○ 공통사항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○ 우대사항

- 장애인, 저소득층 대상자, 국가유공자

- \*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)
- \* 저소득층의 범위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

- 의약품·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

## 2. 보수 및 근무조건

○ 신 분: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원직(기간제) 근로자

○ 근무기관: 다음 장소 중 택일 가능

-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임상심사과  
(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)
- 정부과천청사 내 임상심사과 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)

\* 지원 서류에 희망 근무지역 표시

\*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」 제24조(전보)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

### ○ 근무기간

- (대체전형) 채용계약일 ~ 2025년 9월 12일까지(회계연도 기준)

\* 기존 근무자 휴직기간동안 휴직자의 업무수행

### ○ 근무시간: 주 40시간

\* 육아시간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혜택 제공 (식약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참고)

\* 근무일수 및 시간 조정 가능,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 가능

### ○ 보수수준

구 분		월 기본급
임상심사위원 (가급)	I	8,500,000 ~ 10,000,000원 (연봉 102,000 ~ 120,000천원)
	II	7,500,000 ~ 8,333,330원 (연봉 90,000 ~ 100,000천원)

\* 급식비(월14만원), 명절휴가비(6개월 이상 근무시) 별도 지급

\*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## 3. 구비서류 및 전형 일정

### ○ 제출서류

구분	내용
공통 서류 (필수제출)	-응시원서(시스템 입력) -자기소개서(시스템 입력) -주민등록초본(남녀 공통,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) -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) * 석·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-의사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(해당시) 사본 -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[붙임]파일 기타첨부자료로 제출)
선택 서류 (해당자 제출)	-어학성적서 -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* 국민연금가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 -기타 면허(자격)증 사본 -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(운전면허 제외)

### ○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

-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
- 학력, 경력,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본인, 발행기관,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
- 학력증명서,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
  - \* 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시 문서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, 휴직기간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(구체적으로 기재),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
  - \*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나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,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
- 학력·자격 등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은 공고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

### ○ 면접심사 주의사항

-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

### ○ 시험일정

- 공고 및 접수 : '24. 6. 24.(월) 13:00 ~ '24. 7. 2.(화) 13:00
- 접수방법 :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(<http://employ.mfds.go.kr>)에 접속하여 공고 확인 및 지원코드 선택 후 접수 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※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: 응시 전형 및 부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
- 시험방법 및 일정

시험방법	시험(예정)일자	시험장소	합격자 발표 / 장소
서류심사	'24. 7. 4.(목) 예정	-	개별 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
면접심사	'24. 7. 10.(수) 예정	별도통보	
최종발표	'24. 7. 12.(금) 예정	-	개별 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
근무시작일	추후 결정	-	변동 가능

\* 채용심사 운영상 시험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음

#### 4. 기타사항

-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, 근무기관(지역)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아래 '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**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-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,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, 신원조회·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개인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,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,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채용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,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- 채용 시 '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'에 따라 업무 관련 분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금지됩니다.

**제12조의2(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)**

-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(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근로자 운영 규정」(훈령)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관을 포함한다. 이하 "제한대상자"라 한다)은 의약품·마약·의약외품·화장품·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(이하 "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"라 한다)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<삭 제>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.
  1. 상속, 증여(유증을 포함한다),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
  2.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

※ 문의: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과 오명주 주무관 ☎02-2110-8303

## 5.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

- 기본증명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본·초본 1부(남녀 공통 제출)
  - \*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
-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통장사본 1부
- 신원진술서(약식) 1부
- 반명함판 사진 2매, 흰색 바탕 사진 파일 제출  
(JPG, 해상도 300이상, 354픽셀 \* 472픽셀)
- 장애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